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서화·골동품' 취득세 과세방안

박 석 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등에 대한 욕구증대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할 지방재원은 너무나 취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개발 등 지방세원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국가재원의 지방정부 이양, 탄력세율제도의 적극 활용, 과표의 현실화 추진 등의 방안이 있으며, 원전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관광세 도입방안 등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지방세원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적극 추진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세원개발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방안으로 비교적 고액·사치품이면서 세원포착이 가능한 '서화·골동품'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세원으로서의 가치여부 및 납세자의 담세력여부, 세원포착의 용이성 및 세원포착의 방법 등 신세원으로서의 취득세 도입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부동산, 회원권 및 시설물 등 타 취득세 과세대상과의 조세형평성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검토배경

1. 의의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는 지방세분야에서 지금까지 과세대상으로서 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정의된 바 없으나, '서화·골동품'에 대하여 입법화된 국세의 경우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서화·골동품 :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예술품·골동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덧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다.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장현황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경매 열기가 한창이다. 2005년 상반기 세계 각국의 순수미술 경매 매출액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서울옥션 등 경매전문회사가 본격 출범하면서 지난 2005년 기준 미술품 경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300~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사)한국고미술협회 등 고미술품 전문판매업체와 서울 인사동, 답십리 등 화랑가 및 고미술품 밀집지역에서의 거래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연간 3,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미술품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

우리나라의 서화·골동품 등 고미술품 경매시장의 경우 지난 1998년 출범한 (주)서울옥션이 지난해 말 총100회의 경매를 기록하였고 감정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강남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최근 74%의 낙찰률로 질적인 승부수를 던지면서 K옥션이 새롭게 출범하였고, 또 지난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현재 활동 중인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다 낙찰된 결과는 서화·골동품 등 고미술품 경매시장의 현주소라 하겠다.

지난 2005.12.23일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서울옥션의 100회 경매에서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철화백자운룡문호(鐵畫白磁雲龍文壺 · 37.6×48.5cm)’가 16억2000만원(수수료 별도)에 낙찰돼 이전까지 국내 경매 최고가 기록이었던 고려청자 매병(梅瓶) ‘청자상감매죽조문매병’의 10억9000만원을 깼다. 이날 경매에서는 또 박수근(朴壽根 · 1914~1965)화백이 1960년대에 그린 유화 ‘시장의 여인들’이 9억1000만원에 낙찰돼, 2004.12월 9억원에 낙찰된 박수근의 ‘시장의 여인’ 기록을 두 달 만에 또 경신하며 근현대미술 부문에서 최고가 기록을 세우는 등 최근 경매시장에서의 매매가(낙찰가)가 최고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주)서울옥션의 경쟁상대로 떠오른 K옥션의 첫 경매(2005.11.9)에 박수근, 김환기, 천경자, 도상봉 등 인기작가의 작품들과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등의 고미술품, 데미언 허스트와 로버트 인디애나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등 최소 추정가 기준 60억~80억원 규모의 117점의 작품을 출품해 74%의 낙찰률을 기록한 바 있다.

1) 최병식 경희대 교수·미술평론가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의 주요 낙찰사례]

(주)서울옥션

(단위:천원)

품 명	규 격	제작시기	작 가	추정가	낙찰가	비고
철화백자 운룡문호	37×48cm	조선시대 17C 전반	미상	미정	1,620,000	
청자상감매 죽조문배병	20.5×34cm	고려시대	미상	미정	1,090,000	
시장의 여인들	22×28cm	1960년대	박수근	600,000 ~800,000	910,000	
시장의여인	30×29cm	1960년대	박수근	미상	900,000	
노송영지 (老松靈芝)	103×147cm	조선시대 (을해년)	겸재 정선	550,000 ~600,000	700,000	
청화백자오 죽용문대호	41×55cm	조선시대	미상	미정	620,000	
백자대호	40×37.2cm	1703~ 1719경	미상	600,000 ~800,000	600,000	
청화백자괴 석화문조호	26.5×36.5cm	조선시대	미상	미정	530,000	
노 상	21×25cm	1962	박수근	미정	520,000	
아이업은 소 녀	38×17cm	-	박수근	미정	505,000	

또 최근엔 경매회사나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미술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아트펀드(그림 투자 펀드)' 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년말 PB 서비스에 '미술품 투자 자문' 을 추가했고, 한국증권은 2006.2.16일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미술품투자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하나은행과 K옥션도 최근 미술품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제화랑 등 개별 화랑들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감상과 투자법을 강의하고 있는 등 최근 은행금리가 낮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부동산금이 미술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천경자의 채색화 '북해도 천로에서(1983)' 가 2002년 5월 3,600만원에 낙찰됐다가 3년반 만인 2006.1월 2.6배 오른 9,500만원에 팔린 바 있으며, 김환기 화백이 1960년대에 그린 유화 '산월' 이 2002년 5월 경매에서 8200만원에 낙찰됐다가 3년 만인 2005년



7월에 1.8배 오른 1억5000만원에 판매되는 등 지난 몇 년간 박수근, 김환기 등 이른바 ‘블루칩 화가’ 들의 작품 가격이 100% 가량 올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작가 마크 로드코의 1954년 작품 ‘No.6’ 의 첫 경매가는 92만4000달러(약 9억5500만원)였지만 7년 뒤인 지난해엔 약 18배인 1736만8000달러(약180억원)를 기록하였으며, 윌렘 드 쿠닝의 ‘오레스테스’ 는 1986년 18만 달러(1억8600만원)에서 2002년에는 1320만9500달러(약 136억5000만원)에 낙찰돼 73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리는 등 미술품의 투자열기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다.

3. 국세 과세현황

국세의 경우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소득세법 제20의2제1항)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찍이 작가 개인 및 화랑 등 판매상의 예술 창작품 판매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고, 법인소장가의 소장품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1990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미술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5차에 걸쳐 13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예술계의 반발과 과세에 따른 세원포착의 곤란성으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2003년말 법률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비록 개인소장가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문화계의 반발과 정치적인 논리로 과세제외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첫째, 현재 작가, 화랑, 법인 등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 소장가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을 과세유보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특히 부유한 소장가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 둘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을 거래가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은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반작가의 창작활동 및 일반국민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는 점과, 셋째, 2000년 소득세법 심의시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화랑·고미술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 후에 시행하기로 입법정책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소장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 하겠다.²⁾

[서화·골동품에 대한 국세 과세현황]

구 분	거래유형	과세여부	비 고
작 가	창작품 판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	시 행 중
화랑 등 판매상	소장품 판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	시 행 중
법 인 소 장 가	소장품 양도	법인세 과세	시 행 중
개 인 소 장 가	소장품 양도	일시재산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	1990년입법화 ⇒ 과세유예 (13년간) ⇒ 폐지(2003년말)

4. 취득세 과세의 필요성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취득의 경우 지금까지 지방세분야에서 과세대상으로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최근 (주)서울옥션, 케이옥션, 한국미술품경매 등 고미술품 경매전문업체의 설립으로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서화·골동품 거래가 양성화되고 있어 세원의 포착이 가능해졌으며, 서화·골동품의 구매자의 대부분은 고액재산가로 담세력이 충분하며, 부동산 자금의 고미술품 경매시장으로의 대량유입 등으로 인한 경매시장의 활황으로 고미술품의 매매가(낙찰가)가 최고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계속 비과세할 경우 부동산, 회원권 및 각종 시설물 취득과의 조세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매방식 도입으로 고미술품에 대한 거래가 용이해 대중화·일반화되고 있는 실정하기에 ‘서화·골동품’ 취득에 대한 과세입법화 여건은 충분하다 하겠다.

2)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의원 검토보고서)

III. 취득세 과세방안

1. 담세력 검토

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검토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권력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의 특성상 세원으로서 고려하여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조세가 납세자의 능력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에 의해 부과되고, 납세자가 수혜하고 있는 편익에 의해 세금(benefit received principle)이 부담되는가의 문제이다.

비교적 사치성자산인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구매자의 대부분은 소비에 있어서 자발성과 그 소비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담세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세에 비해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납세자 능력의 원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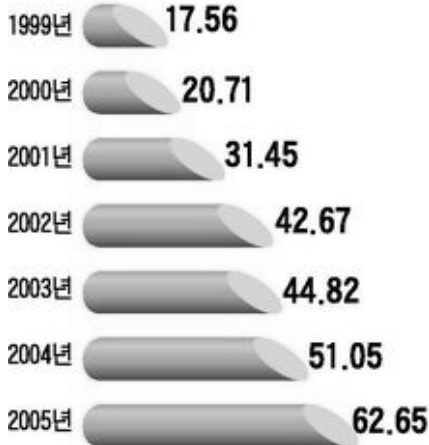
나. 세원으로서의 가치 검토

하나의 새로운 세원이 조세로서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원의 이동이 적고 귀속성과 응징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론상 과세 대상으로서 타당하여야 하고, 국세와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납세자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화·골동품’ 등 우리나라의 예술품시장 규모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나 대체로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³⁾. 3,000억원 중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예술품이 약 1,000억원, 작가, 화랑 등에서의 판매액 약 1,100억원, 조각품, 각종 기념조형물 등 ‘건축물미술장식품’ 제도에 의한 공공미술 시장이 2001년 554억원, 2002년 516억원, 2003년 600억원 등 대략 600여억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서울옥션 등 고미술품 경매전문업체에서의 거래액이 연간 300~400억원

3) 정확한 수치나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미술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어림잡아 약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윤태건, “한국미술시장 탈출구는 있는가?” 중에서)

경매 낙찰률 증가추이(단위:%)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전체 작품 중 낙찰된 작품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질 구매자가 많다는 뜻이다. 자료:서울옥션

반화, 대중화하고 있으며, 경매 낙찰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세수규모는 계속 확장 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세수규모가 작은 승강기나 금고, 교환시설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취득가가 최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서화·골동품 등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부동산, 회원권, 시설물 등 타 취득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충분히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세원의 보편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사치성재산의 취득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원권 및 시설물 등 다른 과세대상과의 조세형평성 문제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세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국미술시장의 규모 및 세수추계]

구분	합 계	해외로부터 수입품	작가, 화랑 등 거래	공공미술시장	경매시장
한국미술 시장의 규모 *	3,000억원	1,000억원	1,100억원	600억원	300억원
세수추계	60억원	20억원	22억원	12억원	6억원

* 윤태건, "한국미술시장 탈출구는 있는가?" 중에서 발췌

규모로 추정된다.

3,000여억원에 달하는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시장 전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 6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세베이스 구축이 어려운 현실에서 개인 간 거래와 같은 음성적인 거래의 경우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인 과세유예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세원으로서 '서화·골동품'은 예술품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소수 지방자치단체에만 세수증대 효과가 있어 세원의 보편성측면에서 세원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경매업체의 등장으로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의 경매가 일

2. 세원포착의 용이성 검토

미술시장의 양성화로서 미술품경매는 우선 거래의 형식이 공개적이며, 낙찰과 유찰이 명확하게 기재된다는 점에서 세원포착은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경매회사들의 속성상 그 자료를 인터넷이나 보도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거나 현장중개를 통한 투명한 거래방식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신빙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경매는 1차 미술시장과 다르게 대부분의 가격이 공개되고 고객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축물미술장식품’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념조형물 및 조각품 등 공공미술품은 취득자가 대부분 법인으로써 세원포착이 용이하다고 하겠으며, 거래 당사자 일방에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장부를 통한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며, 작가 및 화랑 등 판매상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세 과세내역을 통한 세원포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나 금융재산의 온라인 전산망과 같이 가액과 소유주를 과세당국이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간 거래와 같은 음성적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미술품 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경우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모든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적인 개인거래의 경우 한시적으로 과세 유예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도입방안

가.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에 국세의 정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삽입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04조 【정의】</p> <p>서화·골동품 : “서화·골동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예술품·골동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회화·덧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p>

-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다.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과세표준

‘서화·골동품’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거래당사자에 법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를 따르고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세율

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라. 부과징수 방안 등

타 과세대상과 같이 신고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미신고시 보통징수의 방법을 따르되 ‘서화·골동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때까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며, 세원포착이 불가능한 음성적 개인거래에 대해서도 세원포착이 가능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도입전제조건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문화·예술계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서화·골동품의 수요는 거의 완전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이의 취득에 대한 과세는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가격 상승에 수요자는 즉시 반응하여 시장을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서화나 골동품의 구매자인 고액재산가가 세원노출을 우려하는 속성을 감안하면 거래의 음성화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개인소장가의 일시소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저지의 경우와 같이 경영악화를 주장하는 고미

술·화랑업계 등 미술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들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재정현실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세원의 정통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도 커다란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세제라는 평가가 가능할 때 비로소 입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된 세원(소득과세·소비과세)은 이미 모두 국세로 되어 있어 세원이 고갈된 상태이고 과표현실화 등은 납세자가 천만명을 넘어 단기간에 많은 인상을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지방세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작고 조세로서의 적격성이 미흡하더라도 세원확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이 소재한 경상북도·부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강원도의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또는 레저세 과세방안, 충청북도·강원도 등에서 산재한 각종 부존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관광세 또는 광고세 등의 도입방안이 건의되고 있다. 이중 카지노,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카지노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등 어떠한 신세원을 개발하더라도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소액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원화한다 할지라도 세수확충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미술품시장이 소재한 특정 자치단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세목의 개발이 아니라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의 경우와 같이 서화·골동품의 취득을 취득세의 범주에 추가시키는 것이기에 다른 신세원발굴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경매업체의 등장으로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의 경매가 일반화, 대중화하고 있으며, 경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기준이 제시되면서 현재 연간 3천억원 규모인 국내 미술품 거래시장은 계속 확장추세이며, 고액의 사치성재산의 취득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취득세과세대상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에 대한 지방세원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만, 음성적인 거래를 포함한 약 3,000억원에 이르는 서화·골동품 등 예술품 시장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경우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원포착이 가능한 취득부터 단계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며, 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서화·골동품의 특성상 무상승계취득 등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에 국세가 과세되는 한도 내에서 우선 취득세를 과세하고 가치평가방법 및 음성적 개인거래에 대한 포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1. 장미진 외, “문화예술 관련 세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2.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3.12.
3. 최병식, “미술품 경매, 저변을 넓혀야 한다”, 경희대 교수·미술평론가, 2005.12.02
4. 윤태건, “한국미술시장 탈출구는 있는가?” 중에서
5. 조선일보, 이규현 기자 2006.02.24.
6. 동아일보, 허문명 기자 2004. 12. 18.
7. 한국경제, 고두현 기자, 2005. 12. 19.